

등록번호	기획예산과-1223
등록일자	2015.1.19.
결재일자	2015.1.29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이은임	김영혜	장형태	박진석	김찬곤	01/29 최창식
협조					

##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2015년도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

구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건전 재정 운용이 시급하여 예산절감과  
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함.

##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2015년도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



기획재정국  
기획예산과

### I 필요성

- 세제개편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, 사회복지비를 비롯한 법정·의무경비 지속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워 자체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
  - ☞ 2015년 재정자립도 58.5%(2014년 63.5%, 2013년 70.9%, 2012년 76.9%)
-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절감이 불가피하고, 내·외부 재원확보 필요
  - ☞ 민선 6기 효율적 구정 운영 수행을 위한 공약사업·역점사업 재원 마련 필요

### II 추진방향

- 구체적인 예산절감 목표설정, 무분별한 예산변경 사용제한 등 절감노력 확대
- 국·시비 확보사업, 특별교부금사업, 시 참여예산사업 적극 발굴과 서울시 및 대외기관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성과달성과 효율적 사업추진으로 외부재원 확보 주력
- 선례답습적인 예산관행 탈피하여 사업효과성 등을 반영한 예산 구조조정 (Sun-set사업) 추진, 불합리한 교부금·보조금 교부기준 제도개선 건의

### III 세부 추진계획

- 추진기간 : 2015. 1월 ~ 12월
- 대상부서 : 전부서 및 중구 시설관리공단
- 대상사업 : 일반회계, 특별회계
- 추진내용

#### 1. 예산절감 생활화로 긴축재정 운용

- 절감목표 : 3,340백만원(2014년 절감액 1,775백만원)
  - ☞ 전년 절감액 실적 대비 88.2% 목표액 상향 설정
- 절감대상 :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절감 가능 예산
- 절감방법 : 예산과목별 절감을 가이드라인 제시 ※세부내역 별첨 참조
  - ☞ e-호조 시스템에서 예산과목별 유보액을 설정, 예산배정 시 통제

<b>5% 절감</b>	재료비, 연구용역비, 전산개발비, 포상금, 시설비, 의료및구료비, 공사 공단자본전출금,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
<b>10% 절감</b>	사무관리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, 행사운영비, 국외여비, 국제화여비, 외빈초청여비, 기타보상금,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, 자산및물품취득비, 행사실비보상금, 민간행사사업보조, 민간경상사업보조

※ 절감목표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부서의견 수렴 후 총액 내 조정  
(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서류 첨부하여 공문 요청)

#### ○ 절감방안

##### 【인건비】

###### 인건비 절감방안

- 행정운영경비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신규인력 증원 최소화,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감축 및 재배치를 통해 인건비 점진적 축소 노력
- 시간제계약직, 기간제근로자는 업무별 특성상 집중되는 꼭 필요한 시점에 한시적 운영 원칙, 새로운 행정 수요는 계절별 인력 탄력 운용

##### 【기본경비】

###### 기본경비 절감방안

- 사무용품, 전산소모품, 복사지 등 작은 것부터 절약하는 예산절감 생활화 운동 전개
- 전자결재(우편메일, 메모보고 등)를 활용한 종이없는 사무실 정착
- 백서 등 홍보용 책자는 e-book 활용, 에너지 절약 및 우편요금, 차량유지비 등 공공요금 절약 노력, 불필요한 국·내외 출장 최소화 등

##### 【사업비】

###### 사업비 절감방안

- 실효성이 낮거나 성과부진사업은 축소·폐지하거나 유사·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선셋사업 추진, 신규사업은 사업추진 전에 타당성 등 철저히 분석하고 계약심사 강화
-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로 목적의 사용금지(예산전용 제한), 불필요한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 최소화, 집행잔액 임의활용(낙찰차액 등-보조금 예외) 제한
  - ☞ 매칭사업인 경우 우선적으로 보조금 집행(보조금 반납사례 반드시 지양)
- 물품·장비 등 구매 시 기존장비 개보수 활용 가능성, 필요 수량 등 재검토
- 민간이전경비는 법령 등 지원근거, 필요성,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원여부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(개정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연계)

## 2.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외부재원 확보 주력

### 【국·시비 확보사업 발굴】

#### 국·시비 확보 방안

- 정부 및 서울시 예산 중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 확보 주력 예시) 지중화사업, 교통분야(버스승차대 설치 등) 사업, 간판개선 사업 등
- 각 부서별 현안사업·역점사업(공약사업 포함)에 대해 국·시비보조금을 확보 하여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부, 서울시(시의원)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의 철저

### 【서울시 참여예산 추진】

#### 시 참여예산 확보 방안

- 2015년부터 변경 시행될 시참여예산제도와 부응하는 사업 발굴
- 시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-예산부서-동주민센터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유지(시 참여예산위원과의 사전 업무협조 등)

### 【인센티브,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자원 확보】

#### 외부기관 인센티브 확보 방안

- 정부 및 서울시 등 각종 대외기관 평가 또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, 지표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분석과 사전 준비 철저히 각종 평가에 유연하게 대처, 자원확보 주력

### 【특별교부금(세) 사업발굴을 통한 자원 확보】

#### 특별교부금(세) 확보 방안

- 재정여건 상 예산편성 시 삭감된 사업이나 구 시책사업 등 기타 추진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신청하고, 관련 부서 및 시의원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자원확보 주력(구 예산 절감 효과)

## 3. 내부 자체세입 확충

#### 신규 세원 발굴

-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·누락세원 발굴
- 정확한 부과 및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
- 세외수입에 다양한 경영기법 도입(신규세원 발굴 등)

#### 체계적인 체납징수

- 과년도 체납정리 목표액 설정
- 체납 징수 종합대책반 상시 운영
-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압류 등행정통제 강화

#### 세외수입 징수 강화

-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
- 체납관리실태 지도·점검 / 체납 중점정리기간 운영

## 4. 불합리한 자원조정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

### ○ 특별교부금 자치구별 차등교부 개선 건의

- 현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% 미만인 자치구에 대해 보통교부금으로 재정부족액을 보전해주고 있음  
(2015년 경우 보통교부금 교부 후 충족도 ⇒ 97.1%(강남구 제외한 24개구 동일)
- 이처럼 강남구를 제외한 24개구 동일하게 재정부족액을 97.1% 수준에 맞춰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특별교부금 교부 시 보통교부금 교부 전 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교부하므로써 우리구가 이중으로 역차별 받고 있음
-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자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 11조 특별교부금 교부 기준에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교부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매년 자치구별 차등 교부되는 현행 제도(관행)에 대한 개선 건의

### ○ 시비 보조사업 보조율 차등지원 개선 건의

- 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시비 보조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 교부전 수요충족도에 의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을 또다시 받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 건의

## 5. 이월예산, 보조금, 예비비 등 효율적 예산집행 도모

-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예산
  - 이월예산은 재 이월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출납폐쇄기한(2015. 12.31) 내 집행
    - ※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 단축(익년도 2월말 ⇒ 당해연도 12월말)
    - ☞ 국·시비보조금이 포함된 사업 경우 반납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
- 국·시비보조금 예산
  -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당사업 교부조건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국·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, 보조금 반납 사례 반드시 지양
- 예비비 및 포괄경비 사용
  -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하고, 기획예산과 포괄경비는 방침 득한 후 공문으로 사용 요청
- 예산변경 및 전용 제한
  - 무분별하게 예산변경 및 전용을 자제하고, 사업 추진 후 예산 집행잔액 발생 시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집행 노력

## IV 행정사항

- 예산절감 자체계획 수립(전부서)
  - 부서별 자체 실정에 맞는 예산절감 계획수립 및 예산절감(효율화) 사례 제출
    - ⇒ 정부 및 서울시 행정과 “예산효율화 추진계획”과 연계하여 추진
  - Sun-set사업 발굴, 제출(추경예산 편성 시 검토 후 투자재원 활용)
- 재원확충 자체계획 수립(해당 부서)
  - 세입 관련 부서(세무1,2과)는 부서별 자체 계획 수립, 시행 ⇒ 보고회 개최 등
  - 국·시비 확보사업, 각종 인센티브평가, 공모사업, 특별교부금 사업 등과 관련있는 부서는 사전에 정부·시·시의회 등과의 업무협의 필요
    - ⇒ 인센티브 평가 보고회 개최 등 각종 외부평가에 사전 준비 철저